

무배당수퍼직장인가족보장보험 II 교통재해보장특약 I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특약의 체결】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회사”라 합니다)
- ② 회사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2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3조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특약 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사망을 보험금지급사유로하는 계약에서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제4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다만,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이 지급개시된 이후에는 제외)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 및 제1급의 장애상태 등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6조 【특약내용의 변경】

-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7조 【보험료 납입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8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주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됩니다.
-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 특약은 해지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9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復活)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특약을 부활하는 경우의 책임개시일은 제7조(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 (회사의 주된 의무)

제10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가 별표3(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재해(이하 교통재해라 합니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
2.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교통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
3.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지 않고 살아있을 때 : 만기급여금을 지급 (단, 2종 만기환급형에 한함)

제11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료 납입기간중 주계약의 약관에 정한바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0조 제1호의 경우 사망이라 함은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다만,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③ 제10조 제2호의 경우, 재해로 인한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으로 결정합니다.

④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10조 및 제11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⑤ 제10조 제2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두 종목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 그 각각에 해당하는 교통재해장해급여금(이하 장해급여금이라 합니다)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을 드립니다.

⑥ 제5항에 규정한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다른 재해로 인하여 2회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장해급여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장해일 때에는 새로이 발생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급여금을 뺀 금액을 드립니다. 단, 그 장해가 이미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급여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장해일때 새로이 발생한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1년간의 장해급여금에서 이미 발생한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1년간의 장해급여금을 뺀 금액이 있을때에 한하여 새로운 지급사유 발생일에 뺀 금액을 20년간 계속 지급하여 드립니다.

⑦ 제5항에 있어서 그 재해전에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 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하여는 이미 장해급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6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이 특약의 책임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이거나 장해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⑧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0조 제2호의 생활보장급여금의 지급한도는 통산하여 피보험자별로 각각 장해분류표 중 제1급 장해시의 장해급여금으로 합니다.

⑨ 제10조 제2호의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급여금은 이 특약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특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3조 【해약환급금】

-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14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의한 특약의 해지】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여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5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하며, 피보험자의 사망시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16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 (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17조 【보험금 등의 지급】

- ① 회사는 제1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드립니다.
-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계약전 알릴의무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수익자 또는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6관 기 타 사 항

제18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 급 사 유	급 여 명	지 급 금 액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제10조 제1호)	교 통 재해사망 보 험 금	1,000 만원			600 만원		
		(매년지급,단위:만원)			(매년지급,단위:만원)		
		1급	2급	3급	1급	2급	3급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제10조 제2호)	교통재해장해급여금	<table><tr><td>100</td><td>80</td><td>40</td></tr><tr><td colspan="3">* 단, 20회 확정지급</td></tr></table> (단위:만원) <table><tr><td>4급</td><td>5급</td><td>6급</td></tr><tr><td>240</td><td>120</td><td>80</td></tr><tr><td colspan="3">*1회지급</td></tr></table>	100	80	40	* 단, 20회 확정지급			4급	5급	6급	240	120	80	*1회지급			<table><tr><td>60</td><td>48</td><td>24</td></tr><tr><td colspan="3">* 단, 20회 확정지급</td></tr></table> (단위:만원) <table><tr><td>4급</td><td>5급</td><td>6급</td></tr><tr><td>144</td><td>72</td><td>48</td></tr><tr><td colspan="3">*1회지급</td></tr></table>	60	48	24	* 단, 20회 확정지급			4급	5급	6급	144	72	48	*1회지급		
100	80	40																															
* 단, 20회 확정지급																																	
4급	5급	6급																															
240	120	80																															
*1회지급																																	
60	48	24																															
* 단, 20회 확정지급																																	
4급	5급	6급																															
144	72	48																															
*1회지급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제1급장해상태가 되지 않고 살아있을 때 (제10조 제3호)	만기급여금	이미 납입한 특약보험료 전액	-																														

* 개인계약의 경우에는 주피보험자만을 보장하며, 부부계약의 경우에는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를 보장합니다.

* 제1급 내지 제3급의 교통재해장해급여금은 이 특약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별 표 2)

장 해 등 급 분 류 표

주보험의 (별표 3) 참조

(별 표 3)

교 통 재 해 분 류 표

1. 이 보험에서 교통재해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가. 운행중의 교통기관(이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

나.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개찰구의 안쪽을 말합니다)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

다. 도로 통행중 건조물, 공작물등의 도피 또는 건조물, 공작물등으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

2. 제1호에서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에 정한 것을 말합니다.

가. 기차, 전동차, 기동차, 모노레일, 케이블카(공중 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에레베이터 및 에스카레이터 등

나.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오토바이, 스쿠터, 자전거, 화차, 경운기 및 우마차 등

다.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등

3. 제2호의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인한 재해일지라도 도로상에서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시 사용되고 있는 동안이나 도로상을 주행중에 발생한 사고는 교통재해로 봅니다.

4. 제1호“가”또는 “나”에 해당하는 사고일지라도 공장, 토목작업장, 채석장, 탄광 또는 광산의 구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는 피보험자의 그 교통기관으로 인한 직무상의 사고는 교통재해로 보지 아니합니다.

5. 이 표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중에서 개방되어 있는 모든 도로(자동차 전용도로 및 통로를 포함합니다)로서 터널, 교량, 도선시설 등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보완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합니다.